#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2026. 06

| 운용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건설관리처 | 박소영<br>한다은<br>전수빈 | 055-922-5271<br>055-922-5274<br>055-922-5272 |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개정

## 1. 개정이유

가. 관련지침(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개정사항 반영

나. 기준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선방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2. 주요골자

가.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기준 명확화

나. 품질미흡·우수통지서 감점 및 상쇄 세부기준 신설

다. 불명확한 문구, 표, 서식(양식) 등의 정비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지침번호 | 제3612호 |
|---|---|---|---|
| | | 시 행 일 | 2026.07.01 |
| | | 담당부서 | 건설관리처 |
| | | 담 당 자 | 박소영 한다은 전수빈 |

| 개정연번 | 제·개정일자 | 지침번호 |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
|---|---|---|---|
| 제정 | 2020.01.21 | 제2227호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기준 마련 |
| 1차 개정 | 2022.12.30 | 제2901호 | 신용도 배점기준 변경 및 중소·신생기업 인센티브 부여 |
| 2차 개정 | 2026.06.25 | 제3612호 | 작업계획 및 기법, 품질미흡·우수통지서 세부기준 마련 |

##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서류제출기준

제4조 배점기준

제5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기준

제6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제외 및 감점사항

제7조 기타

제8조 재검토기한

**부 칙**

#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감리용역회사(이하 “감리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LH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감리용역 특성에 의해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서류제출기준)** ① 감리용역 참여 시 [별표2]에 따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1]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사전에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

(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제외 및 감점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일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참여감리원의 등급이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 상주감리원의 등급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 별표2 및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나.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등급이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미만인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
4. [별표1]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입찰공고일 현재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별표1]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2.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 감점됨을 유의하여 필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1]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고,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③ 감리용역 참여업체는 [별표1]의 4. 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2]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한다.

④ 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파일로 제출한 것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18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20. 01. 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6. 06.2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차 례

## [별표 1]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8
Ⅱ. 세부 평가기준 ---------- 9
Ⅲ. 세부 평가방법 ---------- 14
Ⅳ. 평가 관련 유의사항 ---------- 24

## [별표 2] : 신청서 작성요령

Ⅰ. 신청서 제출서류 ---------- 25
Ⅱ.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25

별지 제1호서식 :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26
별지 제2호서식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27
별지 제3호서식 : [작업계획 및 기법] 감리계획서 표지 ---------- 28
별지 제4호서식 : 종합평가표 ---------- 29
별지 제5호서식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32
별지 제6호서식 : 참여감리원 경력,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33
별지 제7호서식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36
별지 제8호서식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37
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38
별지 제10호서식: 업무중첩도 ---------- 39
별지 제11호서식: 교체빈도 ---------- 40
별지 제12호서식: 가점 및 감점 ---------- 41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원 참여동의서---------- 42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증명서---------- 43

# [별표 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 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세 부 사 항</th><th>평가방법</th><th>배 점</th></tr>
<tr><td rowspan="2">1. 참여<br>감리원</td><td>등급</td><td>-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br>- 해당용역 입찰공고 시 해당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td><td>-</td><td>-</td></tr>
<tr><td>경력<br>및<br>실적</td><td><table>
<tr><th>분야</th><th>구분</th><th>직책</th><th>경력분야</th><th>점수</th></tr>
<tr><td rowspan="6">정보<br>통신</td><td rowspan="2">상주</td><td rowspan="2">책임감리원<br>(1인)</td><td>정보통신</td><td>10</td></tr>
<tr><td>정보통신감리</td><td>15</td></tr>
<tr><td rowspan="2">상주</td><td rowspan="2">보조감리원</td><td>정보통신</td><td>5</td></tr>
<tr><td>정보통신감리</td><td>10</td></tr>
<tr><td rowspan="2">비상주</td><td rowspan="2">기술지원<br>감리원(1인)</td><td>고급이상</td><td>2</td></tr>
<tr><td>정보통신</td><td>8</td></tr>
<tr><td colspan="4">계</td><td>50</td></tr>
</table></td><td>절대평가</td><td>(50)</td></tr>
<tr><td colspan="2">2. 유사용역<br>수행실적</td><td>-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td><td>절대평가</td><td>(10)</td></tr>
<tr><td colspan="2">3. 신 용 도</td><td>-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br>- 재정상태 건실도</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10)<br>7<br>3</td></tr>
<tr><td colspan="2">4. 기술개발 및<br>투자실적</td><td>- 개발실적<br>- 기술개발투자실적<br>- 교육실적</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10)<br>4<br>4<br>2</td></tr>
<tr><td colspan="2">5. 업무중첩도</td><td>- 상주감리원<br>- 기술지원감리원</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10)<br>6<br>4</td></tr>
<tr><td colspan="2">6. 교체빈도</td><td>- 감리업체<br>- 참여감리원</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5)<br>2.5<br>2.5</td></tr>
<tr><td colspan="2">7. 작업계획 및<br>기법</td><td>- 평가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td><td>절대평가</td><td>(5)</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100</td></tr>
<tr><td colspan="2">8. 가점</td><td>- 기술자격<br><삭 제></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1)<br><삭 제></td></tr>
<tr><td colspan="2">9. 감점</td><td>- 부패행위 관련자<br>- 입찰불참<br>- 품질미흡/우수 통지서(감점상쇄용)</td><td>절대평가<br>절대평가<br>절대평가</td><td>(-5)<br>(-1)<br>(-3)</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d></td></tr>
</table>

# Ⅱ. 세부 평가기준

## 1.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br>요소</th><th>세 부 내 용</th><th>배점</th><th>평가<br>방법</th><th>비<br>고</th></tr>
<tr><td rowspan="5">1.참여<br>감리원<br>[50점]</td><td colspan="2">참여감리원 계</td><td>50</td><td></td><td></td></tr>
<tr><td rowspan="2">[상주]<br>책임<br>감리원<br>(25점)</td><td>□ 정보통신분야경력<br>○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tr><th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h></tr>
<tr><td>구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br>8년이상</td><td>8년미만<br>6년이상</td><td>6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td><td>10</td><td>절대</td><td></td></tr>
<tr><td>□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br>○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table>
<tr><th colspan="5">공사감독·공사감리</th></tr>
<tr><td>구 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br>3년이상</td><td>3년미만</td></tr>
<tr><td>점수</td><td>15</td><td>14</td><td>13</td><td>12</td></tr>
</table></td><td>15</td><td>절대</td><td></td></tr>
<tr><td rowspan="3">[상주]<br>보조<br>감리원<br>(15점)</td><td>※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d>-</td><td>-</td><td></td></tr>
<tr><td>□ 정보통신분야경력<br>○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tr><th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h></tr>
<tr><td>구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br>3년이상</td><td>3년미만<br>2년이상</td><td>2년미만</td></tr>
<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td><td>5</td><td>절대</td><td></td></tr>
<tr><td>□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br>○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table>
<tr><th colspan="4">공사감독·공사감리</th></tr>
<tr><td>구 분</td><td>2년이상</td><td>2년미만<br>1년이상</td><td>1년미만</td></tr>
<tr><td>점수</td><td>10</td><td>9.5</td><td>9</td></tr>
</table></td><td>10</td><td>절대</td><td></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br>요소</th><th>세 부 내 용</th><th>배점</th><th>평가<br>방법</th><th>비<br>고</th></tr>
<tr><td rowspan="3">1.참여<br>감리원<br>[50점]</td><td colspan="2">참여감리원 계</td><td>50</td><td></td><td></td></tr>
<tr><td rowspan="2">[비상주]<br>기술<br>지원<br>감리원<br>(10점)</td><td>□ 정보통신분야 감리등급<br>※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td><td>2</td><td>절대</td><td rowspan="2"></td></tr>
<tr><td>□ 정보통신분야경력<br>○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tr><th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h></tr>
<tr><td>구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br>8년이상</td><td>8년미만<br>6년이상</td><td>6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수</td><td>8</td><td>7</td><td>6</td><td>5</td><td>4</td></tr>
</table></td><td>8</td><td>절대</td></tr>
<tr><td rowspan="2">2.유사용역<br>수행실적<br>[10점]</td><td colspan="2">계</td><td>10</td><td></td><td></td></tr>
<tr><td>□ 감리용역 수행실적<br>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건축물 시설 정보통신 감리용역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기성누계금액이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건축물시설 정보통신 감리용역 실적의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
<tr><th colspan="2">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th></tr>
<tr><td>구 분</td><td>점 수</td></tr>
<tr><td>200%이상</td><td>10</td></tr>
<tr><td>180%이상～200%미만</td><td>8</td></tr>
<tr><td>160%이상～180%미만</td><td>6</td></tr>
<tr><td>140%이상～160%미만</td><td>4</td></tr>
<tr><td>140%미만</td><td>2</td></tr>
</table>
※산정방법 : (유사감리*100%+기타감리*60%)*100%/설계금액<br>
※유사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 (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br>
※기타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 (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td><td>10</td><td>절대</td><td></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 부 내 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비고</th></tr>
<tr><td rowspan="3">3.신용도<br>[10점]</td><td colspan="2">계</td><td>10</td><td></td><td></td></tr>
<tr><td rowspan="2">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br>(7점)</td><td>1)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d>4</td><td rowspan="2">절대</td><td rowspan="2"></td></tr>
<tr><td>2)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d>3</td></tr>
<tr><td>재정상태 건실도<br>(3점)</td><td>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br><br>
<table>
<tr><td colspan="6">- 해당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td></tr>
<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br>75%이상</td><td>75%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25%이상</td><td>25%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
</table>
<br>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도부채)을 기준으로 계산<br><br>
<table>
<tr><td colspan="6">- 해당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td></tr>
<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br>75%이상</td><td>75%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25%이상</td><td>25%미만</td></tr>
<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
</table></td><td>1<br><br>2</td><td>절대</td><td></td></tr>
<tr><td rowspan="2">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br>[10점]</td><td colspan="2">계</td><td>10</td><td></td><td></td></tr>
<tr><td colspan="2">□ 개발실적<br>1) 정보통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br>- 정보통신 신기술 지정 : 건당 2점<br>-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br>-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br><br>
<table>
<tr><td>구 분</td><td>5년이하</td><td>5년초과<br>10년이하</td><td>10년초과<br>20년이하</td></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r><td>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
</table>
<br>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br>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d>4</td><td>절대</td><td></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 부 내 용</th><th>배점</th><th>평가<br>방법</th><th>비<br>고</th></tr>
<tr><td rowspan="2">4.기술개발<br>및<br>투자실적<br>[10점]</td><td>□ 기술개발투자실적<br>○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br>2.0%이상</td><td>2.0%미만<br>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td><td>2.5</td><td>2</td></tr></table></td><td>4</td><td>절대</td><td></td></tr>
<tr><td>□ 교육실적<br>○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br>・정보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정보통신 감리원교육<br>-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2점<br>-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br>(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1점</td><td>2</td><td>절대</td><td></td></tr>
<tr><td rowspan="3">5. 업무<br>충첩도<br>[10점]</td><td colspan="2">계</td><td>10</td><td></td><td></td></tr>
<tr><td>□ 상주감리원<br>○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br><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4</td><td>2</td></tr></table>※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td><td>6</td><td>절대</td><td></td></tr>
<tr><td>□ 기술지원감리원<br>○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br>○ 다른 공사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br><table><tr><td>구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업무중첩도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d>4</td><td>절대</td><td></td></tr>
<tr><td rowspan="3">6. 교체빈도<br>[5점]</td><td colspan="2">계</td><td>5</td><td></td><td></td></tr>
<tr><td>□ 감리업체<br>○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br><table><tr><td>교체빈도율<br>(%)</td><td>10%미만</td><td>10%이상<br>20%미만</td><td>20%이상<br>30%미만</td><td>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0</td><td>1.5</td><td>0</td></tr></table></td><td>2.5</td><td>절대</td><td></td></tr>
<tr><td>□ 참여감리원<br>○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d>2.5</td><td>절대</td><td></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 부 내 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비고</th></tr>
<tr><td rowspan="2">7.작업 계획 및 기법 [5점]</td><td>계</td><td>5</td><td></td><td></td></tr>
<tr><td>○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감리계획서 작성·제출<br>○ 해당 공사감리용역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감리계획서 작성·제출<br><table><tr><td>정상 작성 및 제출</td><td>작성분량(15p) 위반</td><td>미제출</td></tr><tr><td>5점</td><td>3점</td><td>0점</td></tr></table></td><td>5</td><td>절대</td><td></td></tr>
<tr><td>8. 가점 [1점]</td><td>□ 기술자격<br>○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td><td>1</td><td>절대</td><td></td></tr>
<tr><td rowspan="3">9. 감점 [-9점]</td><td>□ 부패행위관련자<br>○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br>○ 감점적용 점수<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br>*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td><td>-5</td><td>절대</td><td></td></tr>
<tr><td>□ 입찰불참<br>○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br>-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2회이상 불참한 자 : 1점 감점</td><td>-1</td><td>절대</td><td></td></tr>
<tr><td>□ LH발급 품질미흡통지서 또는 품질우수통지서<br>○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우수)통지서에 따라 감점을 부여 또는 상쇄<br><삭 제></td><td>-3</td><td>절대</td><td></td></tr>
</table>

# Ⅲ. 세부 평가방법

## 1. 참여감리원

### (1) 경 력

참여감리원 경력은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용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감리원 경력중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을 인정하며 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정보통신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공사감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동일 기간 내 최대 5개소까지 산정한다.

**(나)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

1)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이라 함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완료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나)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동일 기간 내 최대 5개소까지 산정한다.

| 건축물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 | |
|---|---|---|
|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320:상가・백화점・쇼핑센타 | 343:병원 |
|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 321:사무실빌딩 | 350:전통양식건축 |
|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 322:오피스텔 |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
|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 325:인텔리젼트빌딩 |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
| 315:주거・사무실겸용건물 | 330:호텔・숙박시설 | 360:경기장・운동장 |
| |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 361:전시(展示)시설 |
| |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 370:창고,차고,터미널 건물 |
| | 342:학교 |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

**(2) 첨부서류**

(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별지 제5호서식)

(나) 참여감리원 경력(별지 제6-1호서식)

(다) 정보통신분야 및 감리분야 경력 확인서류

| 분 야 | 발행기관 | 제출서류 | 비고 |
|---|---|---|---|
| 정보통신분야<br>(감리포함) | 한국정보통신<br>공사협회 | 기술자경력확인서, 감리원경력확인서,<br>감리원자격증 사본,<br>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 |

o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PQ참여 감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증명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확인

o 참여감리원 경력은 감리원별 상기 발행기관(관련 협회)에서 발급・등재된 경력만 인정

o 경력확인서에 감리경력에 대한 근무형태(상주, 비상주)가 표기되어야 함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건축물시설 정보통신 감리용역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기성누계금액이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스마트도시 건설 관련 감리용역 실적의 합계에 따라 평가

(나) 건축물시설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실적 산정은 유사감리용역은 100% 인정하고,

기타감리용역은 60% 인정한다.

1) 유사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기타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계산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한 용역의 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전체 공사기간} × 공사감리비

| |
|---|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09.20일인 경우, 이행비율 100%인 준공된 공사감리용역의 감리기간이 '16.05.20~'18.10.21이고, 감리비가 500,000천원일 때<br>→ 3년간의 기준일 : '17.09.22~'20.09.20<br>* 시작일(A-365*3+1) ~ 종료일(A)<br>→ 총감리용역 기간 : [('18.10.21)-('16.05.20)+1] = 885일<br>→ 감리수행기간 : [('18.10.21)-('17.09.22)+1] = 395일<br>⇒ 평가감리비 : 395일/885일 × 500,000천원 ≒ 223,163천원(소수점 이하 절사) |

○ 진행중인 용역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임

※ 감리비는 전체용역에 대한 감리비이며, 평가감리비는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감리비임

(다) 공사가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받은 기성금액 누계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전기·소방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나)항의 해당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받거나 실적증명서상의 실적금액이 확실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분담이행사 포함)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별지 제6호서식)

(나)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

(다)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간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3. 신 용 도

### (1)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업체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포함)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적용.

(나)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2) 재정상태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의 경우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로 산정하며, 업체비율은 최근 연도의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비율을 평가에 적용한다.

(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한다.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분담이행사 포함)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 (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별지 제7호서식)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료란에 기재된 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하며, 최초출원자가 감리업체와 현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는 1인으로 간주한다.

**(2) 기술개발투자실적**

(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육실적**

정보통신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구 분 | 교육기관 | 제출서류 |
|---|---|---|
| 정보통신감리원 | 한국ICT폴리텍대학,<br>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 수료증,<br>각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 |

**(4) 첨부서류**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별지 제8호서식)

(나)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 출원인 확인서류 및 정보통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라) 수료증 또는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

## 5. 업무중첩도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감리원이 수행 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입찰공고 지연 등의 사유로 입찰공고 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상 최초 투입예정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명기된 경우 해당용역의 개찰일을 최초 투입예정일로 본다.)

(가) 해당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나) 상주감리원

1)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해당용역 PQ평가에서 제외

2)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기술지원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해당용역 PQ평가에서 제외

나) 타 용역에 기술지원 감리원 또는 전기 비상주감리원 및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4)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감리원경력확인서 상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철수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용역완료 증빙서류(계약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등)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철수사유가 명기된 발주자 확인서류

가)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기존용역에서 철수한 감리원은 철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6)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7) 감리업체 소속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다른 감리업체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LH전자조달>심사>심문고)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별지 제10호서식)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전기 및 소방 관련 협회 업무중첩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6. 교체빈도

### (1)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circ\ \text{교체빈도}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 + 2)

1)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다)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 + 2)

1)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 (2) 참여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2))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다)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 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3) 감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하며 관련수탁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3) 첨부서류**

(가) 교체빈도(별지 제11호서식)

(나) 관련수탁기관 발행 교체빈도 확인서

## 7. 작업계획 및 기법

**(1) 평가방법**

해당용역의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감리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 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가)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 기준

-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2)감리계획서 작성내용'에 관하여 '(3)작성방법'의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작성분량 위반(3점) : 작성분량 미준수

- 미제출(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 해당용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

서 제외한다.

-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 별표5 준용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며, 평가계획 수립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2) 감리계획서 작성내용**

(가) 공사관리계획

* 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시공·품질·공정·안전관리계획을 포함

(나) 감리용역시행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라)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3) 작성방법**

(가) '(2) 감리계획서 작성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작성

(나) 15 Page로 작성(표지(별지 제3호 서식) 및 목차, 간지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

(다) 제출 시 각 페이지에 쪽수를 표기하여 제출

## 8. 가·감점

**(1) 기술자격**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문분야 분류상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2) 부패행위관련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의 제재내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3) 입찰불참**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붙임1] Ⅳ.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2.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불참 통보 문서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

(가)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나) 2회이상 불참한 자 : 1.0점 감점
(다) 입찰불참을 평가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다.

**(4) 품질미흡통지서**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통지서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누계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한다.

- 1회당 : 1.0점 감점(최대3점)
- 유효기간
  - ·감리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감 리 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
|---|
| □ **품질우수통지서**<br>○ LH 발급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품질미흡통지서 감점상쇄용으로만 적용<br>- 유효기간<br>·감리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br>·감 리 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5) 첨부서류**

(가) 가점 및 감점 (별지 제12호 서식)
(나) 관련 협회 증빙자료, 입찰 불참 관련문서, LH에서 발급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사본

## Ⅳ.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해당용역 과업내용서 상 배치착수일*에 참여감리원 중 상주감리원이 타 용역에 상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공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배치착수일이 공고일 이전으로 명기된 경우, 본 입찰 공고의 개찰일을 배치착수일로 간주한다.
   단, 타 용역의 배치계획상 본용역 기간내 배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배치계획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업무중첩도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참여감리원을 2건(타발주처 포함) 이상의 정보통신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건(낙찰자 선정 포함)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취소(해지)

3.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감리원이 심사 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배점의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표 2] 신청서 작성요령

## Ⅰ. 신청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별표 1,2]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1부(모든 증빙서류 포함)

※ 평가서(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가) 규격 : A4 용지

(나) 제본 : 좌편철 무선제본 (표지 : 백색아트지)

(다) 목차구분이 용이하도록 세부 평가항목별 라벨(label)

(라)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에 형광펜으로 표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스캔본(순서 및 내용이 동일한 PDF파일) 1EA

(3) 업체에서 작성(자기평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 1EA

## Ⅱ.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격처리 하고, 자격증·경력·실적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는 실격, 고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한다.
2.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별도로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3.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감리원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필요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시 원본(1부)을 포함한 사본 제출 가능

(2)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공인회계사(세무사)의 등록증 사본 1부 함께 제출한다.

(3) 사본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4)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과 별지서식(hwp)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 가능

4.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전에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5.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감리업체는 해당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 참여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ㅇ지구 ㅇㅇ블록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ㅇ공구(ㅇㅇㅇ호)감리용역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20 . .

업 체 명 : **ㅇㅇ엔지니어링**

[별지 제2호서식]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용역명 : _____

위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감리업등록증 사본 등) 1식.
2. 종합평가표 등 PQ서류 1식.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휴대전화 :
E-Mail :

[별지 제3호서식]

# [작업계획 및 기법]
# 감리 계획서

(용역명 :  )

업 체 명 : _____

[별지 제4호서식]

# 종 합 평 가 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책임 감리원 (성명) | 등급 | | 특급 | - | |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br>-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
| | | | 경력 | 정보통신분야 | 년 | 10 | | | |
| | | | | 정보통신감리분야 | 년 | 15 | | | |
| | | | 계 | | | 25 | | | |
| | | 보조 감리원 | 등급 | 감리원1(성명) | | - | | | |
| | | | | 감리원2(성명) | | | | | |
| | | | 정보통신경력 | 감리원1 | 년 | 5 | 5 | | |
| | | | | 감리원2 | 년 | | 5 | | |
| | | | | 소계1 | | 5 | 10/2=5 | | |
| | | | 정보통신 감리경력 | 감리원1 | 년 | 10 | 10 | | |
| | | | | 감리원2 | 년 | | 10 | | |
| | | | | 소계2 | | 10 | 20/2=10 | | |
| | | | 계(소계1+소계2) | | | 15 | | | |
| | | 기술지원 감리원 (성명) | 등급 | | 고급 | 2 | | | |
| | | | 정보통신경력 | | 년 | 8 | | | |
| | | | 계 | | | 10 | | | |
| | | 합 계 | | | | 50 | | | |

# 종 합 평 가 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 | | 10 | | | |
| | | **계** | | | **10** | | | |
| 3. 신 용 도 | 10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과징금 부과처분포함) | 감리업체 | 월 | 4 | | | |
| | | | 참여감리원 | 월 | 3 | | | |
| | | | 소 계 | | 7 | | |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 1 | | | |
| | | | 유동비율 | | 2 | | | |
| | | | 소 계 | | 3 | | | |
| | | **계** | | | **10** |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개발실적 | 신기술 | 건 점 | 4 | | | |
| | | | 특허 | 건 점 | | | | |
| | | | 실용신안 | 건 점 | | | |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 | 4 | | | |
| | | 교육실적 | 40시간이상 이수 | 점 | 2 | | | |
| | | | 20시간이상 이수 | 점 | | | | |
| | | **계** | | | **10** | | | |
| 5. 업무중첩도 | 10 | 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 개 현장 | 4 | | | |
| | | | 보조감리원 | 개 현장 | 2 | | | |
| | | | 소 계 | | 6 | | | |
| | | 기술지원감리원 | 정보통신 | 개 현장 | 4 | | | |
| | | **계** | | | **10** | | | |
| 6.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 % | 2.5 | | | |
| | | 참여감리원 | | 건 | 2.5 | | | |
| | | **계** | | | **5** | | | |

# 종 합 평 가 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공사 평가 | 비고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감리계획서 | | 5 | | | 절대평가 |
| | | **계** | | **5** | | | |
| 8. 가점 | 1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 | 1 | | | |
| | | **계** | | **1** | | | |
| 9. 감점 | -9 | 부패행위 관련자 | | -5 | | | |
| | | 입찰불참 | | -1 | | | |
| | | 품질미흡(우수)통지서 | | -3 | | | |
| | | **계** | | **-9** | | | |
| 총 합 계 | | | | | | | |

상기 종합평가표는 LH의 입찰공고문 및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 후 적합하게 작성·제출 되었고, 참여시 제출한 종합평가표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 분야 | 직책 | LH의 요구 등급 | PQ 참여 등급 |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 감리분야경력(개월) | | | 소속 회사 | 배치 예정일 |
|---|---|---|---|---|---|---|---|---|---|---|---|
| | | | | | | | 100% 경력 | 60% 경력 | 계 | | |
| 정보 통신 | 책임 감리원 | | | ○○○ | 720210 -0000000 | | | | | | |
| 정보 통신 | 보조 감리원 | | | | | | | | | | |
| 정보 통신 | 보조 감리원 | | | | | | | | | | |
| 정보 통신 | 기술지원 감리원 | 고급이상 | | | | | | | | | |

* 배치예정일은 과업내용서상 명기된 배치예정일을 기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확인하며, 입찰 참여시 제출한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작성
* 붙임: 1.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해당감리원에 형광펜으로 표시)
  2. 감리원 경력 확인서

[별지 제6-1호서식]

# 참여감리원 경력

## 1. 경력[50점]

가. 책임감리원(25점)

| 분야 | 구분 | 경력분야 | 배점 | 년(월)수 | 평점 | 평가 | 비 고 |
|---|---|---|---|---|---|---|---|
| 책임감리원<br>( 0 0 0 ) | 상주 | 정보통신 | 10 | | | | |
| | | 정보통신감리 | 15 | | | | |
| 소 계 | | | 25 | | | | |

나. 보조감리원(15점)

| 분야 | 구분 | 경력분야 | 배점 | 년(월)수 | 평점 | 평가 | 비 고 |
|---|---|---|---|---|---|---|---|
| 보조감리원<br>( 0 0 0 ) | 상주 | 정보통신 | 5 | | | | |
| | | 정보통신감리 | 10 | | | | |
| 소 계 | | | 15 | | | | |
| 분야 | 구분 | 경력분야 | 배점 | 년(월)수 | 평점 | 평가 | 비 고 |
| 보조감리원<br>( 0 0 0 ) | 상주 | 정보통신 | 5 | | | | |
| | | 정보통신감리 | 10 | | | | |
| 소 계 | | | 15 | | | | |

※ 1. 보조감리원(1,2)은 감리원별로 각각 작성
2. 연번은 경력확인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할 것

다. 기술지원감리원(10점)

| 분야 | 구분 | 경력분야 | 배점 | 년(월)수 | 평점 | 평가 | 비 고 |
|---|---|---|---|---|---|---|---|
| 기술지원<br>감리원<br>( 0 0 0 ) | 상주 | 감리등급 | 2 | 고급이상 | | | |
| | | 정보통신 | 8 | | | | |
| 소 계 | | | 10 | | | | |

## 2. 기술자별 경력 세부내용

### 가. 책임감리원 : ○ ○ ○

(1) 정보통신경력

| 경력분야 | 연번(경력확인서) | 참여용역명(예시) | 발주처 | 참여기간 | | 일수 | 인정비율 | 인정일수 |
|---|---|---|---|---|---|---|---|---|
| | | | | 시작 | 종료 | | | |
| 정보통신 | | 설계 등 경력 | | | | | 100% | |
| | | 공사감리업무**(비상주)** | | | | | 20% | |
| 소 계 | | | | | | | | |

(2) 정보통신 감리경력

| 경력분야 | 연번(경력확인서) | 참여용역명(예시) | 건축물코드 | 발주처 | 참여기간 | | 일수 | 인정비율 | 인정일수 |
|---|---|---|---|---|---|---|---|---|---|
| | | | | | 시작 | 종료 | | | |
| 정보통신 감리 | | 주거용 건축물 감리용역 | | | | | | 100% | |
| | | 비주거용 건축물 감리용역 | | | | | | 60% | |
| 소 계 | | | | | | | | | |

### 나. 보조감리원 : ○ ○ ○

(1) 정보통신경력

| 경력분야 | 연번(경력확인서) | 참여용역명(예시) | 발주처 | 참여기간 | | 일수 | 인정비율 | 인정일수 |
|---|---|---|---|---|---|---|---|---|
| | | | | 시작 | 종료 | | | |
| 정보통신 | | 설계 등 경력 | | | | | 100% | |
| | | 공사감리업무**(비상주)** | | | | | 20% | |
| 소 계 | | | | | | | | |

(2) 정보통신 감리경력

| 경력분야 | 연번(경력확인서) | 참여용역명(예시) | 건축물코드 | 발주처 | 참여기간 | | 일수 | 인정비율 | 인정일수 |
|---|---|---|---|---|---|---|---|---|---|
| | | | | | 시작 | 종료 | | | |
| 정보통신 감리 | | 주거용 건축물 감리용역 | | | | | | 100% | |
| | | 비주거용 건축물 감리용역 | | | | | | 60% | |
| 소 계 | | | | | | | | | |

### 다. 기술지원감리원 : ○ ○ ○

(1) 정보통신경력

| 경력분야 | 연번(경력확인서) | 참여용역명(예시) | 발주처 | 참여기간 | | 일수 | 인정비율 | 인정일수 |
|---|---|---|---|---|---|---|---|---|
| | | | | 시작 | 종료 | | | |
| 정보통신 | | 설계 등 경력 | | | | | 100% | |
| | | 공사감리업무**(비상주)** | | | | | 20% | |
| 소 계 | | | | | | | | |

※ 1. 보조감리원(1,2)은 감리원별로 각각 작성
2. 연번은 경력확인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할 것

※ 붙임 : 1.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2. 정보통신 및 감리분야 경력 확인서류

[별지 제6-2호서식]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회사명 :

| 구 분 | | 발주처명 | 감리용역 사업명 | 용 역 기 간 (시작 : 년월일 종료 : 년월일) | 감리용역비 (천원) | 용역개요 (건축물코드) |
|---|---|---|---|---|---|---|
| 완료 |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진행 |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총 계 |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 | 12,345 천원 |
| |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 | 3,000 천원 |
| | 계 | 15,345 천원 |
| 실적인정금액 |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100%인정]** | 12,345 천원 |
| |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60%인정]** | 3,000*0.6 = 1,800 천원 |
| | 계 | 14,145 천원 |

※ 1. 진행중인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기성누계금액이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시 “유사감리” “기타감리”의 용역 개요 작성은 용역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인정되며, 경력확인기관에서 확인불가능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해당분야 실적 인정

※ 붙임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다.

붙 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o 개발실적

| 구 분 | 업체명 | 건 명 | 출원일자 | 유효기간 | 경과기간 | 출원인수 | 점 수 |
|---|---|---|---|---|---|---|---|
| 신기술 | 회사명 | | | | | | (2점×가중치)/출원인수 |
| 특허 | 회사명 | | | | | | (1점×가중치)/출원인수 |
| 실용신안 | 회사명 | | ‘01.6.18 | ‘11.6.17 | 1년10월 | 2 | (0.5점×가중치)/출원인수 |
| 계 | | | | | | | |

*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 o 기술개발 투자실적

| 업체명 |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계 | 비고 |
|---|---|---|---|---|---|---|---|---|
| | 기술개발 투자액 |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액 |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액 | 총매출액 | | |
| A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계산방법**

(1+2+3년차의 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의 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 o 교육실적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책임감리원 |
| | | | | 보조감리원 |
| | | | | 기술지원감리원 |
| 점 수 | - 40시간 이상 : (0명/3명)×1.5점=00점<br>- 20시간~40시간미만: (0명/3명)×0.75=00점<br>계 : 00점 | | | |

**[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 상 호 | | 사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
| 주 소 | |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 | |
|---|---|---|---|---|---|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 총자산 | |
| | | | |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
| | | | |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 총매출액 | |
| | | | |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 총자본 | |
| | | | | | |
|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 (정보통신부문) | | 총매출액 (정보통신부문) | |
| | | 합계금액(A) | | 합계금액(B) | |
| |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 |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 |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서식]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br>(성 명)</th><th colspan="2">현장 배치현황</th><th rowspan="2">점 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현 장 명</th><th>배 치 기 간</th></tr>
<tr><td>책임<br>감리원</td><td>○○○</td><td>○○.... 용역</td><td>'00. 0. 0~ 현재</td><td>4</td><td rowspan="5">· 중복배치시<br>: 0점 및<br>해당용역<br>평가대상에서<br>제외</td></tr>
<tr><td rowspan="4">보조<br>감리원</td><td>○○○</td><td>·</td><td>·</td><td rowspan="4">2</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6">기술지원<br>감리원</td><td rowspan="3">○○○</td><td>○○.... 용역</td><td>'00. 0. 0~ 현재</td><td rowspan="6">4</td><td rowspan="6">· 10개이상<br>:<br>평가대상에서<br>제외</td></tr>
<tr><td>○○.... 용역</td><td>'00. 0. 0~ 현재</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2">○○○</td><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4">총 계</td><td>10</td><td></td></tr>
</table>

**※ 1. 해당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됨.**

2. 책임 및 상주보조 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지원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 신고건 - 경력확인서

·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 교 체 빈 도

## □ 감리업체(2.5점)

| 회사명 | 점 수 계 산 | |
|---|---|---|
|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 점 수 |
| 회사명(A) | 00.00% | |
| | | |
| 계 | | |

## □ 참여감리원(2.5점)

| 구 분 (성 명) | |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 점 수 | 비고 |
|---|---|---|---|---|
| 책임 | | | - 상주현장 : 건×0.5점=<br>-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상주 감리원 | | | - 상주현장 : 건×0.5점=<br>-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 - 상주현장 : 건×0.5점=<br>-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 - 상주현장 : 건×0.5점=<br>-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 | | - 상주현장 : 건×0.5점=<br>-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계 | | | | |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별지 제12호서식]

# 가점 및 감점

## □ 기술자격

| 감리업체명 | 성 명 | 자격종목 | 가점 | 비 고 |
|---|---|---|---|---|
| | | | | |

* 첨 부 : 관련 자격증 사본

##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감리원 | 참여업체 | 감점 점수 | 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첨 부 : 관련문서 등 증빙자료

## □ 입찰불참

| 입찰불참 업체명 | 감점 점수 | 비 고 |
|---|---|---|
| | | |
| 계 | | |

* 입찰불참 관련문서 첨부

## □ 품질미흡·우수통지서

| 구 분 | | 최근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 평점 | 평가 |
|---|---|---|---|---|
| 업체명 | | | | |
| 참여기술자명 | | | | |
| 소 계 | | | | |
| 구 분 | | 최근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 평점 | 평가 |
| 업체명 | | | | |
| 참여기술자명 | | | | |
| 소 계 | | | | |
| 계 | | | | |

* 첨 부 : LH에서 발급한 품질미흡·우수통지서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 감리원 참여동의서

LH「00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기준으로 상주감리원은 타 현장 상주·비상주감리원으로, 비상주감리원은 타 현장 상주·일반감리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타 용역 참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나 계약 취소(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참여동의자

| 구 분 | | 성 명 | 생년월일 | 관련협회 회원번호 |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 서 명 | 비 고 |
|---|---|---|---|---|---|---|---|
| 상주 | 책임 감리원 | 최00 | 00.00.00 | | 2025.12.31 | | 2개월 착공지연 |
| | 보조 감리원 | 김00 | 00.00.00 | | 2025.12.31 | | 용역종료 |
| | | 박00 | 00.00.00 | | | | 해당없음 |
| 비상주 | 기술지원 감리원 | 이00 | 00.00.00 | | 2026.01.20 | | 퇴사 |

20 . .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공사감리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 | | | | | |
|---|---|---|---|---|---|
| 발주자 | 회 사 명 | | 법인(사업)번호 | |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
| | 소 재 지 | | | | |
| 감리업체 | 회 사 명 | | 업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
| | 소 재 지 | | | | |
| 용역수행사실내용 | ①구 분 | □신설공사 □보수공사 | | | |
| | ②용 역 명 | | | | |
| | ③현장주소 | (전화번호 : ) | | | |
| | ④용역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에 따른 건축물시설명 기입) | | | |
| | ⑤계약내용 | ㅇ형태 : □단독감리 □통합감리 □연차감리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br>(공동 · 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br>ㅇ용역비 : 천원, ㅇ기간 : ~ | | | |
| | ⑥계약이행 내용 | 구 분 | 금액(천원) | 수행 또는 계약기간 | 비 고 |
| | | 기 성 분 | | | |
| | | 계약잔여분 | | | |
| | | 총 괄 | | | |
| | ⑦참여감리원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감리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확 인 | |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br>년 월 일<br>발주자명 : (인)<br>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br>담당자명 : (인) | | | |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에 따른 건축물 시설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직무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전기·소방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정보통신 감리용역 등 해당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 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